

#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SJC 건의사항

2011년 12월

서울 재팬 클럽

## 목 차

서 문 .....1

요 약 .....3

### 본 문

1. 노동·노사 관련 분야(4개 항목) .....12

계속 4개 항목

2. 금융 분야(3개 항목) .....20

신규 2개 항목, 계속 1개 항목

3. 지적재산권 분야(22개 항목) .....25

신규 5개 항목, 계속 17개 항목

4. 개별 요망사항(5개 항목) .....47

신규 3개 항목, 계속 2개 항목

5. 생활환경개선 분야(1개 항목) .....56

계속 1개 항목

합계 35개 항목 (신규 10개 항목, 계속 25개 항목)

## 서 문

서울재팬클럽(SJC)은 1998 년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비즈니스 상의 애로사항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건의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저희 건의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해 주시고 많은 개선조치를 강구해 주신 데 대해 SJC 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 14 차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신 후 신속한 답변과 개선을 위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2011 년 3 월 11 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일본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이 가장 빨리 구조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일본의 기간소재 및 부품의 공급이 중단되어 한국도 큰 영향을 입었으나 그 후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복구 및 복선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지진피해를 통해 양국의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근래 일한관계는 일본내 한류 붐 등을 배경으로 양국간의 무역량 확대, 일본기업의 대한직접투자 및 관광객 증대로 대표되듯이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한양국기업은 어느 부분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라이벌이기도 하지만 그 외의 큰 부분에서는 상호보완적인 최상의 파트너로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는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여 공존공영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경제 발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강하게 생각합니다.

SJC 도 일한 FTA 가 일한 산업 및 기술협력을 가속화 및 고도화시켜 양국 경제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유효한 수단이며 미래지향적인 일한관계 전반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아직까지도 협상이 재개되지 않은 사실 자체가 향후의 일한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한 FTA 의 조속한 협상 재개와 체결을 바라며 이번 달 초에 한국 정부기관측에 FTA 협상 재개와 체결을 요망드린 바 있습니다.

SJC 는 한국의 비즈니스환경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 개선상황을 회원기업뿐 아니라 많은 일본기업에게 알리고 양국의 경제관계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의에서는 노동·노사, 금융, 지적재산, 개별안건, 생활관련 등에서 총 35 개 항목을 건의했습니다. 이 중 신규안건은 10 건, 계속안건은 25 건입니다.

SJC 는 각 전문위원회에서 국제표준(Global Standard)과 일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국의 현 상황을 충분히 분석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여 건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혹시 한국의 법률 및 제도개정상황에 대한 저희측의 조사가 부족하여 건의내용이 이미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노사분야의 4 개 항목은 모두 계속안건입니다. 이 분야는 일본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반면 한국의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해결이 어려워 소위 하드코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문제의 진전 없이는 한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각별한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금융분야는 신규 2개 항목, 계속 1개 항목입니다.

지적재산분야는 가장 많은 22개 항목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한국 저작권 등 침해시정명령 및 한국내 절차를 위한 외국인 권리자의 신청의 용이화’, ‘디자인보호법의 로고 및 아이콘 보호범위’, ‘지적재산재판 판례집 제공’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해결이 기대되는 항목도 많습니다. 이는 지적재산 보호를 통한 기업활동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꾸준한 제도 개정 및 확충을 요망합니다.

개별안건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사전통지 및 연기 승인’, ‘약가사후관리제도의 개선’ 등이 있습니다. 비록 개별안건이긴 하나 많은 기업, 그리고 국민생활에도 파급효과가 있는 공통사항이므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관련분야에서는 교통문제 개선을 요망합니다.

SJC 로서도 일본의 대한투자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한국정부에서 이번 건의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1년 12월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아와야 츠토무(栗谷勉)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의무 철폐 【계속 / 내용변경】**

한국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도록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나 동의가 전제된다면 노사협상에서 기업측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 1항에 있는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의무’의 철폐를 요망한다.

**2) 유급휴가 보상 금지 【계속 / 내용변경】**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사용 유급휴가의 보상의무 면제 및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가 마련되면서 일정한 조건 아래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었다. 그러나 휴가의 금전보상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기재한 경우에는 개정이 어렵고 휴가사용 촉진제도 실행이 어렵다는 등의 실정으로 인해 유급휴가의 실제사용이나 일과 삶의 균형(워크 라이프 밸런스)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과 삶의 균형의 중요성을 널리 국민에게 홍보하여 휴가사용 촉진을 도모함과 함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아도 휴가의 금전보상이 면제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시행’하거나 혹은 ‘유급휴가 금전보상의 폐지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할 것’을 요망한다.

**3)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연장 【계속 / 내용변경】**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9년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규직에 적합한 인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이 짧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지식이나 직능 향상을 도모하기에 기간이 짧다는 것이 원인이라 생각된다. 현 상황에서도 동일 사업장에 오래 근무한 비정규직일수록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 바, 정규직의 고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 및 상용고용형 파견사업의 법제도화를 요망한다.

**4) 국가유공자 고용의무의 탄력적 운용 【계속 / 내용변경】**

국가유공자 고용의무와 관련하여 기존 건의에 대해 귀 정부로부터 ‘어학능력을 갖추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알선한다’, ‘취업지원 대상자를 5배수로 추천하여 인재 선택권을 부여한다’ 등의 답신을 받은 바 있으나 여전히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추천 받은 인재 사이에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용 후 기업에서 능력향상 교육을 별도로 해야 하는 등 기업측 부담이 여전히 큰 실정이다.

따라서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원하는 인재요건에 대해 조사하여 그 인재요건에 부합하도록 교육과 실습을 실시하는 등 능동적 활동을 요망한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이중언어구사자를 고용하는 등 동일 활동규모라도 한국 현지기업보다 많은 종업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20명 정도의 소규모 사업소에게는 부담이 크므로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인원수의 완화를 요망한다.

**금융분야** (신규 2개 항목, 계속 1개 항목)

5) 국외지배주주 지불보증에 의한 국내차입 지급이자 손금처리 【계속】

지불보증만을 취득하고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실제 자금흐름은 국내에서 완결되므로 다른 국내자본의 동업종 타사가 행하는 국내조달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국외지배주주가 지불보증을 하더라도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동 주주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해도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망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보고’ 간소화 【신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고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이하와 같이 변경할 것을 요망한다.

① 사후보고 조항의 추가 및 신설: 보고업무 효율화를 위해 업무위탁에 관한 사후보고 조항을 추가 및 신설한다.

② 보고부처의 일원화: 당국의 보고처를 현행 2개 부처에서 1개 부처로 일원화한다.

7)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등 외화자금조달에 관한 규제 완화 【신규】

외국은행 지점의 외화차입은 대부분이 안정자금의 성격이 강한 국외 본지점에서 조달한 것이다. 2011년 8월 1일 시행된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는 본지점 차입마저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자금조달 비용의 대폭적 상승은 외국은행 지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뿐 아니라 대출대상인 일반기업이나 현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율에 전가되기 쉬워 한국 경제나 산업계 전체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개선책으로써 1) 높은 부담금 요율을 현행의 절반 이하로 경감, 2) 안정자금의 성격이 강한 본지점 차입에 대한 부담금의 경감조치, 3) 외국은행 지점이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유연한 금융정책 등의 검토를 요망한다.

**지적재산권 분야** (신규 6개 항목, 계속 17개 항목)

8) 침해 입증의 용이화 【일부 계속】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침해나 손해액의 입증 등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소지한

문서나 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원에 문서나 정보 등의 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필요한 문서나 정보 등이 있어도 이들이 제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침해나 손해액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 등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에게 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를 요망한다. 또한 해당서류, 정보 등은 영업비밀인 경우도 많으므로 제출된 문서와 정보 등에 대해 정보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함께 요망한다.

#### 9) 간접 침해 규정의 확충 【계속】

특허발명의 생산 또는 실시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재료 등을 침해자에게 공급하는 행위 등은 이른바 간접침해로써 권리침해의 하나로 간주되는데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발명에 대한 전용부품(발명의 생산 또는 실시‘에만’ 사용된 물품)을 공급 등을 한 경우에 한해 간접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그 부품 등이 특허발명에 대한 전용부품인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게 되는데 가령 침해물품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악의를 가지고 부품을 공급했다라도 전용부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간접침해 행위로 간주되지 않아 특허권의 온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권리보호 강화라는 관점에서 특허발명인 사실 및 침해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부품 등을 공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간접침해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망한다.

#### 10) 법원에 의한 특허권 등의 유효·무효 판단 【계속】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고가 대상 특허권 등의 유효, 무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별도로 제기해야 한다. 때문에 침해소송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침해소송에서 특허권 무효의 항변을 인정하고, 특허가 무효화 되어야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것을 판단하여 조기에 그리고 단발적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의 도입을 요망한다.

#### 11)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 제한 폐지 【계속】

현행제도에서는 누구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등록공고 후 3개월 경과 이전까지이며 등록공고 후 3개월 이후에는 이해관계자와 심사관 이외에는 더 이상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권은 배타적 독점권이라는 강력한 권리이므로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이 결여된 권리를 유지하는 것은 공익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신규성, 진보성 등의 결여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무효화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특허권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누구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할 것을 요망한다.

**12) PCT 출원의 보정범위 확대【계속】**

PCT 에 의한 국제특허 출원이 한국국내에 진입한 경우 국내진입 시 제출한 번역문에 근거한 보정만 인정되고 있고 국제출원 원문에 근거한 절차 보정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예를 들어 번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올바른 보정을 할 수가 없어 권리취득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PCT 에 의한 국제특허 출원의 국내진입 시 국제특허 출원 원문에 근거한 절차 보정을 인정하도록 보정범위의 확대를 요망한다.

**13) 외국어 출원의 도입【계속】**

한국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할 때 현행제도에서는 한국어로 출원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기업활동이나 특허제도의 글로벌화에 따라 여러 국가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제도로는 단기간에 한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또한 번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절차보정이 제한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어에 의한 특허출원을 허용하는 외국어 특허출원 채택을 요망한다.

**14)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 통지 응답기간 및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신청기간 연장【계속】**

주요 각국에서는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의 응답기간이 대략 3~4 개월인데 한국에서는 2 개월이라 이것을 연장하기 위한 수수료가 소요된다.

따라서 해당기간을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3~4 개월로 해줄 것을 요망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에 대해서도 현행 30 일간을 보다 연장해줄 것을 요망한다.

**15) 특허 분할출원의 시기적 요건 완화【계속】**

특허출원 후 사업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출원을 분할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강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수요가 기업 등에게 적지 않게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특허결정 후에는 더 이상 분할출원을 할 기회가 인정되지 않아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특허결정 후라 할지라도 일정기간 분할이 가능하도록 분할출원의 시기적 요건 완화를 요망한다.

**16) 특허출원의 다수종속청구 용인【신규】**

현행제도의 운용에 따르면 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재함에 있어 다른 청구항을 다수인용한 청구항을 재차 다수인용하는 기재(이른바 다수종속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다면적인 특허권 취득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 특허청 및 유럽 특허청과 같이 다수종속청구에 의한 특허청구 범위의 기



재를 용인하도록 요망한다.

#### 17)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보호 【계속】

현행제도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록매체(예를 들면, DVD 나 CD-ROM 등)에 기억된 것에 한하여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비로소 실행되는 것인데, 설치된 프로그램 자체는 기록매체에 기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인터넷 등의 보급에 따라 네트워크 상에서 프로그램을 유통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접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특허보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망한다.

#### 18) 디자인 등록 요건 개선 【계속】

한국에서는 동일 출원인이라도 물품 전체의 의장(디자인)을 먼저 출원한 후 해당물품의 일부 등에 대해 의장을 출원할 경우 해당물품의 일부 등에 대한 의장출원은 먼저 출원한 물품 전체의 의장출원에 의해 거절되어 등록을 할 수가 없다. 한편, 최근 들어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디자인의 독자성이 높은 부분만 모방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물품의 일부 등에 대해서도 권리보호를 도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동일 출원인에게는 선출원한 의장의 일부 등을 후출원하는 경우에도 거절대상으로 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요망한다.

#### 19) 물품과 수상기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화면디자인의 보호 확충 【계속】

한국의 제도에서는 화면디자인을 출원할 때 물품과 화면디자인의 일체성이 요구된다. 그 때문에 예를 들면 DVD 플레이어 같은 물품의 경우 DVD 를 조작하기 위한 화면을 TV 에 표시할 때 해당조작화면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TV’ 라는 식으로 TV 와 일체가 된 화면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예를 들면, DVD 플레이어와 TV 의 관계처럼 물품(DVD)과 수상기(TV)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화면디자인을 물품의 일부로(DVD 의 조작화면을 DVD 의 일부로) 의장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망한다.

#### 20)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로고와 아이콘 등의 보호범위 【신규】

한국이 로카르노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물품과는 상관없는 로고와 아이콘 등의 분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데, 물품에서 벗어나 로고나 아이콘 그 자체에 권리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권리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 제 3 자의 디자인 창작활동이 저해된다.

따라서 해당분류를 도입할 경우에는 출원인이 출원 시에 로고와 아이콘 등에 관련된 물품의 범위를 특정화하는 등 일정한 제약을 마련할 것을 요망한다.

## 21)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무심사 물품의 재검토 【신규】

앞서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 조기에 권리부여를 하고자 무심사로 등록할 수 있는 물품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프린터 등 유행성이 강하지 않은 제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프린터 등과 같이 무심사로 할 경우 오히려 피해가 발생하는 물품에 대해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하여 무심사 물품의 구분을 재검토할 것을 요망한다.

## 22) 상표출원의 선출원에 관한 규정적용의 판단 시기 개선 【계속】

일본,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는 타인이 먼저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등록 A 를 받은 경우 그 후에 출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B 는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등록상표 A 와 상표 B 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의 판단을 다른 주요 국가들과는 달리 상표 B 의 출원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상표 B 심사 시에 등록상표 A 가 소멸되어 있더라도 상표 B 출원 시 존재한 경우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등록상표 A 에 의해 상표 B 가 거절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른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타인이 선출원한 등록상표와 그 후에 출원된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의 판단을 할 시에는 선출원의 귀추를 기다려 그 후에 출원된 상표의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심사할 것을 요망한다.

## 23) 상표의 지정상품의 포괄적 기재에 관한 개선 【계속】

예를 들면, 프린터와 프린터 카트리지와 같이 본체 상품과 그 부속품에 대해 같은 상표를 부착하여 포괄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권리의 온전한 보호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상표출원을 할 때 지정상품을 기재함에 있어 본체 상품과 그 부속품을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 부속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모두 열거해야 한다.

따라서 상표출원 시 지정상품의 기재방법으로 본체상품과 그 부속품 하는 식으로 포괄적인 기재를 허용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망한다.

## 24) 특허청 웹사이트(KIPRIS)에서 제공되는 의장, 상표 검색시스템의 개선 【계속, 일부 변경】

한국 특허청 웹사이트(KIPRIS)는 일부 의장 및 상표공보에 대해 영문으로 번역되어 있어 영어로 검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의장 및 상표공보에 대한 영문번역이 아니어서 영어검색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모든 의장 및 상표공보에 대해 영문으로 번역해서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요망한다.

## 25) 지적재산 판례집의 제공 【신규】

현재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주요 판결’이 공개되어 있는데 일부에 한정되어 있고 지적재산 관련 판결로서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지적재산의 활용을 충분히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법원의 지적재산 관련 모든 판결에 대해 판례로써 전문을 공개함과 함께 법률이나 결론 등의 구분, 기타 문서 등에 의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개를 요망한다.

## 26) 외국 권리자(단체)에 의한 한국의 저작권 등 침해 시정 명령 및 한국내 절차를 위한 신청의 용이화 【신규】

한국은 인터넷 해적판에 대한 대책으로써 외국 권리자(단체)가 저작권 등 침해 시정명령 절차를 위한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등 매우 선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신청을 한국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 권리자(단체) 입장에서는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신청을 외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영어나 일본어 등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 개선할 것을 요망한다.

## 27) 한국의 시청자를 위한 TV 프로그램, 극장용 영화 라이선스 비즈니스의 문제점 【계속】

한국에서는 여전히 일본 TV 프로그램을 지상파에서 배척하는 등 일본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존재한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일본 콘텐츠의 자막삽입 불법 업로드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프로그램 포맷의 모방도 횡행하는 등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인식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본 콘텐츠에 대한 전근대적인 규제를 조속히 완화함과 함께 불법 업로드 단속, 프로그램 포맷 모방에 대한 지도, 기타 저작물에 대한 법령준수 지도, 계몽 활동을 실시하여 지적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도록 요망한다.

## 28) 국경조치의 강화 【계속】

현재 세관의 국경조치는 원칙적으로 상표와 저작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모조품이 다양화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특허 등 다른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이 한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세관단속 대상에 특허 등 다른 지적재산권도 널리 포함하도록 요망한다.

## 29)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및 통과규제 강화, 단속직원에 대한 모조품 판별교육 등의 확충 【계속, 일부 변경】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ACTA)에 서명하고 협정의 조

기발효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복잡해지는 모조품 등의 유통경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이나 환적화물 통과 시에도 단속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ACTA 에서도 제창되었듯이 집행기관의 지적재산 전문가 육성 및 수준향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경조치로 수입할 때 모조품 등의 단속을 해왔으나 수출 및 통과 시에도 단속을 시행함과 함께 세관직원 등에 대한 모조품 판별교육 등의 기회를 더욱 확충하여 모조품 문제를 안고 있는 각 기업에 널리 알리도록 요망한다.

**개별 요망사항** (신규 4 개 항목, 계속 2 개 항목)

30)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품가격과 관련하여 시장가격을 조사하고자 인터넷가격 조사를 할 때 종합적이며 적절한 판단의 필요성에 대해 【신규】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때 조달청과 다수공급자 계약을 맺은 후 공급하게 되는데, 조달청은 계약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는 시장의 실태가 확인될 경우 계약자의 계약단가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조달청이 비교대상으로 삼는 가격(특히 인터넷 상의 가격)이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금액과 상업적 실태를 반영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단가의 인하를 요구할 경우 시장가격 조사와 관련하여 특히 인터넷시장가격에 대해 거래의 신뢰성, 계속성, 빈도, 수량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요망한다.

3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사전통지 및 연기 승인 【신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회사사정상 조사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도 연기 사유가 제한되어 있어 연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반면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경험이 없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조사대응에 상당한 시간 및 노력이 소요된다. 다른 정부조사(예를 들어 국세청, 관세청, 노동부, 환경청 등)의 경우 사전통지를 받는 경우가 많아 회사는 충분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다른 정부조사와 마찬가지로 현장조사를 하기 전에 사전통지해줄 것을 요망한다. 또한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있어 연기신청을 할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관련처분 및 조사를 원칙적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요망한다.

32) 전기전자제품 등 폐기물 관리기관의 일원화 【신규】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관리기관은 2 군데(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로 나뉘어 있는데, 비슷한 데이터 및 실적자료 등을 관할기관마다 제출해야 하고 관리를 받고 있어 업무부담이 크다. 전기전자제품

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기관의 일원화를 요망한다.

### 33)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개선 【계속】

금년 8월 12일부로 한국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신약가정책(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2012년에는 현행 수준의 53.55%까지 일괄적으로 인하)은 제약기업의 한국내 사업전개 의욕을 감퇴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장래의 의료수준 저하를 초래한다. 따라서 우선 특허만료에 따른 오리지널의 강제인하 폭을 압축하고, 그 후에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자유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오리지널과 제네릭에 '시장형 실거래가격제도'를 적용할 것을 요망한다.

### 34) 신약 약가산정 절차의 개선 【계속】

2007년 1월 보험약가산정제도가 Positive List System으로 변경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HIRA: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외에 건강보험공단(이하, NHIC: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까지 더해져 이중으로 약가협상을 하게 된 결과, 협상기간이 공연히 장기화됨으로써 오랜 시간과 막대한 개발투자를 통해 보건의료국으로부터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허가받은 신약이 일상적인 보험진료에 사용되지 못하고 보험이 상환되는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HIRA와 NHIC의 업무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약가산정 협상과 관련하여 중복적으로 제약기업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개선할 것을 요망한다.

### 35) 교통문제 관련 개선 【계속】

오토바이의 보도주행, 자동차의 신호무시, 버스의 급발진 및 급정차 등의 단속강화 및 정부의 교통도덕 향상을 위한 지도를 요망한다.

## 건의사항 (본문)

### 1. 노동·노사 관련 분야

건 명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의무 철폐 【계속/내용 변경】
현황/문제점	<p>한국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p> <p>본 규정은 한국의 노동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을 견제할 목적으로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 명문화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p> <p>그러나 ‘불이익 변경에 대한 조합의 동의의무’로 인해 과도하게 사용자측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이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p> <p>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은 어떠한 사정의 경우라도 불이익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밖에 없다. 한 편, 조합측은 사용자에 대해 노동쟁의권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측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p> <p>2010 년도의 건의에 대해 귀 정부로부터 ‘판례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결하고 있다’는 답신을 받았으며, 또한 ‘일본의 판례 및 노동계약법(제 9 조, 제 10 조)에서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일방적 부과”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한국의 판례와 거의 동일하다’고 하였는데, 일본의 판례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일방적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 한편, 고도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의 집단적 합의를 얻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금년 SJC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경영환경에 따른 유연한 노동조건을 설정하기 어렵다’, ‘경미한 변경이라도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취업규칙 개정에 탄력성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많았는데, 실정상 어려운 경영환경 아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p> <p>격변하는 작금의 세계경제 정세 속에서는 기동적인 경영시책의 실행이 요구되는데 이처럼 과도한 조합에 대한 권리부여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 내리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p> <p>우리측 건의는 선진화하는 한국에서 해외투자가가 가장 우려하는 노</p>

	<p>사문제를 노사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의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화하고, 안심하고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의 선진화를 추진하는 귀 정부와 공통의 과제인식에 입각한 것이다.</p>
개선요망	<p>상기의 현황 및 문제의식을 감안하여 이하 3 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 해주기 바란다.</p> <p>① 근로기준법 제 94 조 제 1 항(규칙작성, 변경절차)에 있는 ‘불이익 변경 시의 동의의무’의 철폐를 요망한다.</p> <p>② 2009, 2010 년도 귀 정부의 답신 가운데 판례법리를 반영했다고 하는 ‘취업규칙의 해석 및 운영지침’(2009.4.24)은 귀측이 답신한 ‘일본의 판례에서도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인 판단기준은 한국의 판례와 거의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근거로서 꼭 공개해주기 바란다.</p> <p>③ 상기의 운영방침 공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판례 등을 감안하여 취업규칙 변경 시 운용 가이드라인이 될만한 매뉴얼 등 자료의 제공을 요망한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근로기준법 제 94 조 제 1 항
비 고	일본에서도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노사간에 협상하는 것이 통례적이지만 반드시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노동기준법 제 90 조).

<p>건 명</p>	<p>2. 유급휴가 보상 금지 【계속/내용 변경】</p>
<p>현황/문제점</p>	<p>근로시간의 길이는 노동생산성과 비례하지 않으며 오히려 일과 삶의 균형(워크 라이프 밸런스)을 중시하여 적절하게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선진국가들에서 통례적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2,193 시간은 OECD 가입국 평균 1,749 시간과 비교하면 1.25 배이다. 이것은 작년에 발표된 자료와 거의 비슷한 수치이며 여전히 연간근로시간이 선진국가들 가운데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p> <p>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요인의 하나로 한국의 판례에 따라 확립된 유급휴가 금전보상의 개념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2003년 8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되고, 일정조건 아래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었는데 귀 정부가 근로자의 휴가사용촉진에 대한 제도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p> <p>그러나 실정을 보면 이하의 요인들에 의해 휴가의 사용촉진은 부진한데, SJC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답변 가운데 가장 개선요망이 두드러지는 사항이다.</p> <p>① 취업규칙, 단체협약 개정의 어려움</p> <p>2003년 8월 법개정 전에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체결한 한국내 일본기업 대다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휴가 금전보상을 명문화하고 있다. 과거 건의에 대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근로조건의 변경은 유효하다’는 답신을 받은 바 있는데, 사용자측이 휴가를 사용하기 쉬운 환경의 정비를 위해 유급휴가 금전보상을 폐지하고 휴가사용을 촉진하려고 해도 한국의 근로자 대부분은 유급휴가를 임금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유급휴가의 금전보상을 기득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로부터의 합의를 얻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p> <p>② 사용촉진제도 실행의 어려움</p> <p>현행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서는 ‘3개월 전의 서면통지’, ‘2개월 전의 사용시기 지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간사업계획 달성을 위해 기업이 총력을 기울여 일하는 마지막 3개월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집중해서 사용할 경우, 특히 제조업에게는 생산계획에 큰 지장이 초래되므로 현실적인 시책이 아니다.</p>
<p>개선요망</p>	<p>상기의 현황 및 문제의식을 감안하여 이하 4 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망한다.</p> <p>① 법제도의 개정</p>



	<p>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변경하지 않고 유급휴가 금전보상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 61 조를 개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보다 우선하도록’ 법개정을 요망한다.</p> <p>② 불이익 변경에서 제외</p> <p>상기①의 법개정 실시가 어렵거나 또는 시간이 걸릴 경우 유급휴가 금전보상의 폐지가 적절한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합리적인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 금전보상 폐지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귀 정부의 공식적인 행정해석을 관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지시켜주기 바란다.</p> <p>③ 사용촉진제도의 유연한 운용</p> <p>연말에 집중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노동현장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현행 ‘3개월전 서면통지’ 규정을 ‘3개월~6개월전까지 서면통지’와 같이 유연한 운용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용자가 기업의 건전한 활동과 근로자의 건전한 생활 양측에 유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해주기 바란다.</p> <p>④ 휴가사용촉진의 홍보 강화</p> <p>근본적으로 ‘유급휴가=임금’이라는 관념이 근로자들 사이에 뿌리깊게 인식되고 있는데, 휴가사용의 소중함과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중요성을 널리 국민에게 알려 휴가를 사용하기 쉬운 사회환경을 정비해주시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lt;관련기관&gt; 고용노동부 &lt;관련법령&gt; 근로기준법 1 조, 5 조, 61 조, 94 조 1 항</p>
<p>비 고</p>	<p>일본의 경우, 행정해석(1955년 11월 30일 기수 4718호)에서 ‘법정 일수 이내의 유급휴가 금전보상’은 위법으로 하고 있다.</p> <p>또한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계획연차휴가제도’(노동기준법 39조 5항)을 제정하였으며, ‘8월중 5일간 하기휴가를 계획연차휴가’로 하는 등 종업원 개인의 시계지정권이나 시계변경권을 배제하고 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p>

<p>건 명</p>	<p>3.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연장 【계속/내용 변경】</p>
<p>현황/문제점</p>	<p>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수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통계(2011년 3월)에 따르면 정규직 1,129만 4,000명(작년대비 1.6% 증가), 비정규직 577만 1,000명(작년대비 5.0% 증가)이었다. 또한 사용기간을 제한하여 정규직 전환을 도모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이 2009년 7월 1일 시행되고 약 2년이 경과하였는데 정규직으로의 전환비율에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p> <p>이것은 크게 보호받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위험부담이 커서 고정비용 증가를 감행하지 못하는 사용자측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p> <p>상기와 같이 비정규직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며 법 개정이나 법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사회, 사용자, 근로자 3자에게 있어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최대의 문제점이라고 사료된다.</p> <p>① 사용자</p> <p>2년마다 근로자 교체가 필수적이므로 업무의 숙련도가 향상되지 않고 업무효율이 나쁘다. 또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싶어도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고도의 업무를 맡길 수 없어 그 인재가 정규직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p> <p>② 근로자</p> <p>정형화된 업무만 주어지기 때문에 업무지식이나 직능 향상을 도모할 수가 없어 노동시장에서 가치를 제고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2년 경과 후 정규직으로의 전환은커녕 취업환경이 안 좋을 경우 다른 비정규직으로 취직하기도 어려워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p> <p>③ 한국사회</p> <p>정규직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 외에 실업률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쟁력이 낮은 고용환경에서는 해외로부터의 추가적인 투자나 그에 따른 신규고용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p> <p>한편, 사용기간 연장의 긍정적인 면은 귀 부가 발표한(2011년 3월 15일)'2011년 1월 기준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나타나 있듯이 계약만료자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은 장기간 동일 사업장에 근무한 자일수록 정규직으로의 전환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년 6개월 이상~2년 미만 19.7%, 2년 이상 23.7%).</p> <p>또한 SJC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실한 설문조사에서도 사용기간이 연장된다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기업이 있다. 이처럼 사용기간의 연장은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귀 정부의 방침에도 부합한다.</p>

	<p>지금까지의 법개정 경위를 보더라도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고용기간의 연장을 조기에 실현하는 것이 한국사회, 근로자, 사용자 3 자에게 이익이 되며 한국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p>
<p>개선요망</p>	<p>상기의 현황 및 문제의식을 감안하여 이하 2 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 해주기 바란다.</p> <p>①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연장</p> <p>2009년, 2010년의 건의에 대해 귀 정부로부터 ‘사용기간을 2년에서 최장 4 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답신을 받았다. 현 시점의 검토상황과 향후 검토일정에 대해 부디 공개해줄 것을 요망한다.</p> <p>② 상용고용형 파견사업의 법제도화</p> <p>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의 정규직 고용이므로 정규직의 고용자수가 증가하는 것 외에도 고용안정과 기한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업무능력 및 직무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져 근로의욕이 높은 파견근로자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용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파견근로자의 확보가 용이해짐으로써 인재의 배치전환을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p> <p>‘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 조의 목적에서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공헌하여 인원수급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상용고용형 파견은 그야말로 이 법률을 구현하는 사업이며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면이 많으므로 조속한 법제도화를 요망한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p>
<p>비 고</p>	<p>일본에서 근로자 파견기간은 3 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특히 전문성이 높은 26 개 업무의 파견기간은 무기한으로 되어 있다(노동자파견법 제 40 조 제 2 항).</p> <p>일본의 상용고용형 파견 고용규모는 작으나마 33 만명을 고용하였으며 과거 10 년간 약 5 배의 규모가 되었다.</p>

<p>건 명</p>	<p>4. 국가유공자 고용의무의 탄력적 운용 【계속/내용 변경】</p>
<p>현황/문제점</p>	<p>국가유공자 고용의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 조에 의해 상시 20 인 이상을 고용하는 일반사업장 (제조업 사업장은 상시 200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은 국가유공자를 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리고 본 법률에 대해 2003 년부터 2007 년까지 5 회, 그리고 2009 년, 2010 년을 포함하여 총 7 회에 걸쳐 외국기업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해왔다.</p> <p>이에 대해 2007 년 건의에 대한 귀 정부 답신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알선할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기업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자 등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유공자를 알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009년 답신에서는“‘고용명령’이란 용어를 ‘보훈특별고용’으로 명칭을 바꾸고 취업지원 대상자를 5 배수로 추천하여 기업 등이 선택한 자를 고용하도록 하여 인재선택권을 부여한다 ”, 2010 년 답신에서는 2009 년도 조치에 따라 ‘경감완화조치는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인투자기업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는 것으로써 건의한 내용은 이미 제도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취업추진 과정에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답신을 받았다.</p> <p>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유자를 추천함에 있어 5 배수로 추천하여 기업 등이 선택한 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인재선택권이 부여됨으로써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은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요건과 괴리감이 있어 후보자의 선정 및 고용이 촉진되지 못하는 일이 존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와 같은 사례가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추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일반 신입사원(이 중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나 국가유공자유족 증명서를 가진 자도 있다)에 비해 고용 후 기업에서의 능력향상 교육이 별도로 필요한 사례가 많다. 그럴 경우 입사 후 교육에 일반신입사원이 불공평함을 느끼고 사내의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의 노무담당자가 사내의 인심(人心)조정에 부심하는 등, 고용 후 교육비용뿐만 아니라 기업통제 상의 부담이 크다.</li> <li>② 자격요건의 괴리감으로 인해 고용이 부진할 경우 국가보훈처와 협상 개시 후 반년을 기점으로 채용명령이 내려지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아닌 경우에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li> <li>③ 특히, 20 명 정도의 소규모사업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기 때문에 이중언어구사 직원의 고용 등으로 현지기업보다 종업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면이 있으므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유자 1</li> </ul>

	<p>명의 고용부담을 지는 것은 경영적으로 매우 힘들다. 자격요건의 괴리감이 발생하고 상기 ①②의 상황이 겹치면 긴 장래에 걸쳐 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업에 대한 부담이 크다.</p> <p>이상과 같이 일본계기업으로부터 여전히 국가유공자 고용의무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한다’는 정책과 정신은 존중하지만 고용촉진과 기업경영의 부담과의 균형에 대한 배려를 얻고자 제도운영 상 몇 가지 점에 대한 개선을 부탁하는 바이다.</p>
<p>개선요망</p>	<p>상기의 현황 및 문제의식을 감안하여 이하 3 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해주기 바란다.</p> <p>① 외국인투자기업측이 원하는 요건에 대해 보다 실효성이 있는 방법으로 취업지원대상자를 부합토록 하는 대책을 시행해주기 바란다. 이것은 추천인 수의 증가나 인재선택권을 기업에게 위양한다는 수동적 대책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측이 원하는 요건이 무엇이며 어떤 수준인가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교육이나 실습)이 필요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감안한 능동적 활동을 포함하는 대책까지 검토해주기 바란다.</p> <p>② 또한 ①에 기재된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추천자측만의 대책으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고용하는 기업측의 인재요건에 부합토록 하기 위해 고용 전 혹은 고용 후 취업지원대상자의 기능, 능력향상활동(교육이나 실습)에 대한 보상이나 우대조치도 그 개선활동에 포함하여 검토해주기 바란다.</p> <p>③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20 명 정도의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중언어구사 직원 고용의 필요성 등 고용면에서의 부담이 큰 것을 감안하여, 고용의무 인원수 완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부탁하고자 한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근로기준법 제 94 조 제 1 항 &lt;관련기관&gt; 국가보훈처 &lt;관련법령&g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 장 취업촉진(제 28 조 내지 39 조)</p>

## 2. 금융 분야

<p>건 명</p>	<p>5. 국외지배주주의 지불보증에 의한 국내차입 지급이자 손금처리 【계속】</p>
<p>현황/문제점</p>	<p>내국법인의 차입금 가운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 및 동 주주의 지불보증에 의해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 배(금융업은 6 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배당 등으로 간주되어 손금산입을 할 수가 없다.</p> <p>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면 지급이자 및 할인료 지불이 국외에 대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단순히 지불보증만을 취득하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실제 자금흐름은 국내에서 완결되므로 다른 국내자본의 동업종 타사의 국내조달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써 형평성에 매우 어긋난다.</p>
<p>개선요망</p>	<p>국외지배주주의 지불보증이 있더라도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동 주주 출자지분의 3 배(금융업 6 배)를 초과하여도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한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lt;관련기관&gt; 기획재정부 조세실 국제조세제도과 및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lt;관련법령&gt;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 장 제 14 조</p>
<p>비 고</p>	<p>&lt;일본의 사례에 대해&gt;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동 주주 출자지분의 3 배(금융업은 6 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지만, 국외지배주주의 지불보증으로 일본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소자본세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39 조 13)</p>

<p>건 명</p>	<p>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보고’ 간소화 【신규】</p>
<p>현황/문제점</p>	<p><b>1. 현황</b>  금융기관이 인가 등을 받은 업무에 대해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의 위탁 등 규정으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 3 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가능하며, 적용되는 규정은 이하 2 종류이다.</p> <p><b>1)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b>  동규정은 금융기관이 인가 받은 업무를 제 3 자에게 위탁 시 적용</p> <p>(1) 사전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업무위수탁 체결예정일의 7 영업일 전까지 그 사실을 동 규정에서 정한 서류(계약서 사본,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li> <li>② 보고처: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총괄국 은행영업감독팀</li> </ul> <p>(2) 사후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당 금융기관 또는 동일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른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같은 경우로 위탁/수탁 상대의 업종이 같은 경우, 혹은 이미 보고한 내용의 일부 변경 시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금융기관은 사전보고를 생략하고 사후에 반기 현황보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li> <li>② 보고처: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총괄국 은행영업감독팀</li> </ul> <p><b>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b>  동 법은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 거래 시에 적용</p> <p>(1) 사전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금융투자업자는 업무위수탁을 수행하는 날의 7 일전까지 동 법에서 정하는 서류(계약서 사본, 업무위탁운영기준 등)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앞으로 위임)에 보고</li> <li>② 보고처: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 총괄국 은행영업감독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 금융투자업무팀</li> </ul> <p>(2) 사후보고: 없음</p> <p><b>2.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전보고는 보고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사후보고에 비해 많고 제출서류의 작성부담이 크다.</li> <li>2)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는 사후보고제도가 있</li> </ul>

	<p>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사후보고제도가 없어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도 모두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p>
<p>개선요망</p>	<p><b>개선요망사항</b></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이하와 같이 변경할 것을 요망한다.</p> <p>1) 사후보고 조항의 신설 보고업무 효율화를 위해 업무위탁에 관한 사후보고 조항을 신설</p> <p>2) 보고부처의 일원화 당국의 보고처를 현행 2 개 부처에서 1 개 부처로 일원화 한다. 현재 보고처”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총괄국 은행영업감독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 금융투자업무팀</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lt;관련기관&gt; 금융감독원</p> <p>&lt;관련법령&gt; 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p>
<p>비 고</p>	



<p>건 명</p>	<p>7.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등 외화자금조달에 관한 규제 완화 【신규】</p>
<p>현황/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8월 1일 시행된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에 따르면 동일 이후 각 은행은 외화부채의 하루평균잔액에 대해 이하의 높은 부담금이 부과되며, 매사업년도 종료후 4개월 이내에 통지되는 금액을 동 5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에 미달리화로 납부하도록 하였다(3월 결산 일본은행은 2012년 8월말이 첫회 납부기한). 부과요율: 1년 이하: 20bp, 1~3년: 10bp, 3~5년: 5bp, 5년 이상: 2bp</li> <li>● 외국은행 지점의 자금조달은 주로 외화차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금조달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li> <li>● 외국은행 지점의 외화차입은 그 대부분이 국외 본지점으로부터의 조달이다. 리먼사태 등 과거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지점 차입은 시장으로부터의 조달자금과는 달리 유동성 위기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잔고가 유지되었다. 따라서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안정자금의 성격이 강한 본지점 차입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부담금 부과는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li> <li>● 부담금에 따른 조달비용의 상승분은 결과적으로 대출대상인 일반 기업이나 현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율에 전가되기 십상이므로 한국경제나 산업계 전체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li> <li>● 또한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이외에도 2007년 8월 이후 외화대출 및 외화발행채권 투자와 관련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데, 외국은행 지점의 비즈니스가 제약을 받음과 동시에 한국내 기업의 원활한 외화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li> </ul>

<p>개선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외국은행 지점이 현지 산업계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산업의 보호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부담금 요율을 현행의 절반 이하로 경감할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li> <li>● 급격한 자본유출을 완화하고자 하는 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안정자금 성격이 강한 본지점 차입에 대한 부담금의 경감조치를 검토해주기 바란다.</li> <li>● 외국은행 지점이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를 위해 유연한 금융정책을 검토해주기 바란다.</li> </ul>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lt;관련기관&gt; 한국은행(외화건전성부담금 관련기관)</p> <p>&lt;관련법령&gt; 외환거래법 제 11 조 2, 외환거래법 시행령 제 21 조 2~21 조 10</p>
<p>비 고</p>	

### 3. 지적재산권 분야

건 명	8. 침해 입증의 용이화 【일부 계속】
현황/문제점	침해 입증, 손해액 입증을 하기 위해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 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개선요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침해 입증, 손해액 입증을 하기 위해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 정보 등(영업비밀을 포함)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법원이 당사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요망한다.</u></li> <li>2. 이 때 문서가 영업비밀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별히 허락된 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u>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제도를 정비해줄 것</u>을 요망한다.</li> <li>3. 또한 한국의 지적재산 관련 재판에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증거가 당사자로부터 제출되면 법원만이 그 증거를 보는 식의 운용을 일부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운용을 인카메라 절차로써 법률상에 명시해주기 바란다.</li> <li>4. 이러한 소송심리 중 증거수집에 관한 요망사항과 관련하여 2007년 한국국회에 제출된 특허법 개정법안의 132조, 224조 3~5가 성립됨에 따라 대부분은 실현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요망한다.</li> </ol>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lt;관련기관&gt; 법무부, 대법원사법부, 지식경제부, 특허청</p> <p>&lt;관련법령&gt; 민사소송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p>
비 고	일본에서는 일본특허법 105조에 따라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입법화되어 있다.

건 명	9. 간접 침해 규정의 확충 【계속】
현황/문제점	<p>1. 현행법은 특허권의 침해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재료를 침해자에게 공급하는 예비적 행위 등을 침해행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대상을 전용부품(그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에만’의 요건이 엄격히 해석될 경우 간접침해 규정에 의한 구제가 어려워진다.</p> <p>2. 또한 실제로 권리소송 현장에서 해당 요건이 엄격하게 운용되는 추세라고 듣고 있다.</p>
개선요망	<p>권리보호 강화라는 관점에서 <u>악의(특허발명이라는 사실 및 침해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로</u> 부품을 공급하는 행위까지 간접침해 성립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망한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lt;관련기관&gt; 대법원 사법부, 특허청</p> <p>&lt;관련법령&gt; 특허법, 실용신안법</p>
비 고	<p>일본에서는 특허발명 실시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그 생산에 사용되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양도 등을 행하는 행위는 간접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일본국 특허법 101 조). 그 밖에 독일 특허법 10 조, 미국 특허법 271 조(c)를 참조.</p>

건 명	10. 법원에 의한 특허권 등의 유효·무효 판단 【계속】
현황/문제점	현 제도는 법원이 특허의 유효/무효와 침해사실의 유무를 동시에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개선요망	<p>1. 특허 등에 관한 소송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본, 미국, 영국 등과 같이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피고에 의한 특허무효(또는 그것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것)의 항변을 인정하고, <u>법원이 특허의 유효/무효와 침해사실의 유무를 동시에 판단할 것을</u> 요망한다.</p> <p>2. 아울러 현시점에서 특허권 침해소송 대상인 특허발명이 명확하게 신규성을 상실하고 있는 경우 등에서 법원은 특허무효의 항변 및 특허권자의 권리남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분쟁의 조기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여기서 진일보하여 예를 들어 특허법 내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해당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따라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인정될 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하고 법원이 침해소송에서 대상권리의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망한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lt;관련기관&gt; 법무부, 대법원 사법부, 특허청</p> <p>&lt;관련법령&gt; 특허법 등</p>
비 고	일본에서는 일본 특허법 104 조 3 항에 의해 침해소송에서 해당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입법화 되어있다.

건 명	11.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 제한 폐지 【계속】
현황/문제점	<p>1. 현행 무효심판제도에서는 등록공고 후 3 개월 이후에는 이해관계자와 심사관에게만 청구인 적격이 이루어지며 누구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등록 공고 후 3 개월 경과 전까지만 가능하다(특허법 133 조 1 항).</p> <p>2. 그러나 신규성 결여, 진보성 결여 등의 공익적 이유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적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
개선요망	<p>1. <u>신규성 결여, 진보성 결여 등의 공익적 이유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나 누구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하도록 요망한다.</u></p> <p>2. 본 요망에 대해서는 현행제도에서도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들었으나 특허법을 운용에 맞추어 개정하더라도 무효심판의 청구건수가 급증하여 특허권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심판이나 판결취소소송에서 청구인 적격을 다투는 일이 없어지게 되므로 법개정을 통해 분쟁의 조기해결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lt;관련기관&gt; 특허청 &lt;관련법령&gt; 특허법 133 조 1 항</p>
비 고	<p>일본(일본 특허법 123 조), 미국, 영국 등 각국에서는 특허등록 후 제 3 자가 특허무효를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청구인 적격을 이해관계자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p>

건 명	12. PCT 출원의 보정범위 확대 【계속】
현황/문제점	<p>1. PCT 에 의해 국제특허 출원을 하고 한국국내에 진입하는 경우 국내진입 시 제출한 번역문에 근거하여 절차보정을 할 수 있는데 (한국 특허법 208 조), 번역문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국제출원 원문 기재내용에 근거하여 절차를 보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p> <p>2. 그러나 외국출원인의 입장에서는 원문에 입각해 절차보정을 할 수 없을 경우 원문의 의도를 번역문에서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불편이 따르게 된다.</p>
개선요망	<p>1. 한국에서도 <u>PCT 에 의한 국제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절차보정을 국제특허출원 원문에 근거하여 할 수 있도록</u> 요망한다.</p> <p>2. 본 요망사항을 반영한 특허법 개정과 관련하여 빈번한 법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PLT 조약 및 SPLT 조약에 맞게 특허법을 개정할 때 고려하겠다는 견해를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나 PLT 조약 및 SPLT 조약의 조기발효는 예단을 불허하는 상황이다.</p> <p>3. 한편, 한국은 최근 수년간 거의 매년 특허법을 개정해왔으며 특허제도의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p> <p>4. 따라서 본 요망사항에 대해서도 PLT 조약 및 SPLT 조약의 발효를 기다릴 것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lt;관련기관&gt; 특허청 &lt;관련법령&gt; 특허법</p>
비 고	<p>일본은 PCT 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원문으로 회귀하여 보정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일본 특허법 184 조 12 제 2 항). 따라서 한국인이 한국어로 국제출원한 것으로써 일본 국내에 진입한 특허출원은 한국어 원문에 입각하여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채택되고 있다.</p>

건 명	13. 외국어 출원의 도입 【계속】
현황/문제점	<p>1. 한국 특허청에 대한 특허출원은 한국어로 출원해야만 한다.</p> <p>2. 그러나 ①파리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1 년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특허출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단기간에 번역문을 작성해야 할 필요가 발생함과 더불어, ②원서에 처음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즉,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출원 당시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출원 후에 보정을 통해 추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역이 있을 경우에는 외국어로 기재한 내용을 근거로 그 오역을 정정할 수가 없는 등 발명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p>
개선요망	<p>1. <u>외국어에 의한 특허출원을 허용하는 외국어 출원을 채택할 것을 요망한다.</u></p> <p>2. 본 요망사항과 관련하여 PLT 조약 및 SLPT 조약에 맞게 특허법을 개정할 때 고려하겠다는 견해를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들었으나 본 요망사항에 대해서도 PLT 조약 및 SPLT 조약의 발효를 기다릴 것 없이 조기에 검토해주기 바란다.</p> <p>3. 또한, 외국어 출원을 도입할 경우 심사관의 부담증가를 한국 특허청에서는 우려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PCT 에 의한 국제출원이 한국 국내 단계로 진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어로 출원된 출원심사에 대해서도 출원인이 출원 후 소정기간 내에 제출한 한국어 번역문을 바탕으로 실시함으로써 크게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p> <p>4. 또한 모든 외국어 출원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제도도입 초기에는 사실상 세계공통어인 영어 등 일부 외국어에 국한하고 순차적으로 다른 외국어를 대상에 추가할 것을 요망한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lt;관련기관&gt; 특허청</p> <p>&lt;관련법령&gt; 특허법</p>



비 고	일본에서는 특허법 36 조 2 에 의해 외국어 출원이 허용되고 있다. 그 밖에 미국 37CFR1.52(d), 대만 특허법 25 조, 태국 특허법에 근거한 성령 제 21 호 12 조 2 항, 인도네시아 특허법 30 조 2 항 참조.
-----	--

<p>건 명</p>	<p>14.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 통지 응답기간 및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신청기간 연장 【계속】</p>
<p>현황/문제점</p>	<p>1. 한국에서는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응답의 지정기간은 통상 2 개월간이다. 또한 거절결정에 대해 심판, 재심사 등의 불복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0 일간(기간연장이 인정된 경우에는 추가로 30 일간)으로 되어 있다.</p> <p>2. 그러나 한국어 문헌이 인용사례인 경우 등에서 인용사례의 번역이 필요한 외국출원인 입장에서는 이 지정기간의 기간 중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p> <p>3. 또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장할 때마다 연장신청절차가 필요한데, 한국 특허청에 지불하는 연장비용과 그보다 훨씬 고액의 대리인 수수료가 필요하다.</p>
<p>개선요망</p>	<p>1. <u>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응답의 지정기간을 3~4 개월간으로</u> 해 주기 바란다.</p> <p>2. 또한 <u>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심판청구, 재심사청구)의 기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연장, 장기화해 주기</u> 바란다.</p> <p>3. 또한 지정기간의 장기화가 어려울 경우 예를 들면, 지정기간 내에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신청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나중에 거절이유 통지에 응답할 때 필요한 절차와 연장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제도를 통해 출원인은 1 개월마다 연장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더라도 거절이유 통지 송달 후 예를 들면 6 개월 이내에 응답 또는 실제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출원인에게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응답의사가 없는 출원이 대량으로 축적될 걱정은 없다고 생각한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lt;관련기관&gt; 특허청 &lt;관련법령&gt; 특허법</p>
<p>비 고</p>	<p>한국 특허청은 응답기간을 장기화하면 도입검토 중인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나 일본에서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응답기간은 재외국민의 경우 3 개월(신청에 의해 3 개월 연장가능, 일본방식 심사편람 04.10)이다.</p> <p>또한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신청기간에 대해서도 일본에서는 3 개월(일본 특허법 121 조)로 되어 있다.</p> <p>기타 각국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응답기간은 미국 3 개월, EPC 4 개월, 중국 4 개월, 대만 3 개월이다.</p>

건 명	15. 특허 분할출원의 시기적 요건 완화 【계속】
현황/문제점	<p>1. 현행제도에서는 특허청구 범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특허사정된 출원에 대해 출원을 분할하여 더욱 정확한 특허청구 범위에서의 권리화를 지향하는 길이 닫혀있어 실효성이 있는 다면적, 망라적 권리취득이 어려운 상황이다.</p> <p>2. 즉, 실효성이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출원인은 특허사정을 받을 때까지 특허청구 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다면적, 망라적으로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p> <p>3. 그러나 심사관에 의해 최종판단(사정)과 여기에 부수하는 선행 기술조사 결과가 제시되기 이전 단계에서 어느 범위까지 넓게 권리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출원인 스스로 전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특허사정 시의 특허청구 범위가 충분히 실효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다.</p>
개선요망	<u>특허사정 후의 일정기간에도 분할이 가능한 제도를 요망한다.</u>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lt;관련기관&gt; 특허청</p> <p>&lt;관련법령&gt; 특허법</p>
비 고	일본에서는 동일한 제도개정을 2007 년에 시행하여 특허사정 후 30 일 이내에 분할출원이 가능(일본 특허법 44 조 1 항)하게 되어 많은 출원인들에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건 명	16. 특허출원의 다수종속청구 용인 【계속】
현황/문제점	<p>1. 현재 다중인용한 다른 종속항 등을 다중인용하는 종속항(소위 다수종속청구)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p> <p>2. 그러나 발명의 다면적인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종속형식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
개선요망	<p>1. 이른바 <u>다수종속청구의 표현을 인정할 것을 요망한다.</u></p> <p>2. 또한 본 요망과 관련하여 다중인용한 다른 종속항의 다중인용을 인정할 경우 권리범위의 이해가 어려워짐과 동시에 청구항의 수에 따라 계산되는 각종 비용의 계산이 번잡해질 것을 한국 특허청은 걱정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동일한 청구표현을 인정하고 있는 일본 및 유럽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lt;관련기관&gt; 특허청</p> <p>&lt;관련법령&gt; 특허법, 심사기준</p>
비 고	<p>일본 및 유럽 특허협력조약에서는 이러한 종속형식의 청구표현을 인정하고 있다.</p>

건 명	17.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보호 【계속】
현황/문제점	<p>1. 컴퓨터관련 발명 심사기준 2.2.1 에 따르면 기억매체에 기억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법의 보호대상이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p> <p>2. 그러나 기억매체에 기억된 컴퓨터 프로그램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이와 같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p> <p>①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설치해야만 실행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컴퓨터에 설치했을 때 혹은 설치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비로소 특허권이 실시된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는 기억매체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억시키지 않기 때문에 침해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다.</p> <p>③ 한편, 각 사용자에게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특허권 침해는 생산 및 경영을 목적으로 행할 경우에 해당되므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는 침해자가 되지 않는다.</p>
개선요망	<p>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특허법 보호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의 검토가 시작되었다고 들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발명의 모방이 매우 쉽다는 점에서도 그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u>실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특허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망한다.</u></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lt;관련기관&gt; 특허청 &lt;관련법령&gt; 특허법, 심사기준</p>
비 고	<p>일본에서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읽기 가능한 기록매체’와 함께 ‘프로그램 자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특허법 2조, 심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만에서도 2008년 5월 심사기준 개정에 따라, 또한 영국에서도 2008년 2월부터 프로그램 자체를 특허 대상으로 하고 있다.</p>

<p>건 명</p>	<p>18. 디자인 등록 요건 개선 (동일출원인에 의한, 선출원의장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출원 의장출원의 허가) 【계속】</p>
<p>현황/문제점</p>	<p>1. 한국에서는 동일 출원인이라도 전체의장을 출원한 후에 부분의장이나 부품의장을 출원하면 소위 확대된 선원에 의해 거절되어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 5 조 3 항) 따라서 디자인을 개발할 때 제품 전체, 각 부품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디자인이 결정되는 개발 실태에 맞추어 적시에 출원하는 것이 어렵다.</p> <p>2. 또한 최근 모조품 피해 증가를 배경으로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 디자인의 독자성이 높은 부분만 모방하는 피해에 대항하기 위한 부분의장 혹은 부품의장의 의장권 취득을 전략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p> <p>3. 따라서 일본에서는 부분의장 혹은 부품의장의 의장권을 전략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전체의장→부분의장 혹은 부품의장의 순서로 출원하고, 각각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한국에 출원하려 하면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한국출원일도 전체의장→부분의장 혹은 부품의장의 순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후출원의 부분의장 혹은 부품의장이 거절되는 실정이다.</p>
<p>개선요망</p>	<p><u>동일출원인에 의한 출원의 경우, 선원의장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의 부분의장 혹은 부품의장에 대하여 보호대상이 되도록</u> 디자인보호법 제 5 조 3 항에 의한 디자인등록요건에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이들을 거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망한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lt;관련기관 &gt; 특허청 &lt;관련법령 &gt; 디자인보호법 제 5 조 제 3 항</p>
<p>비 고</p>	<p>일본에 대해서는 2007 년 시행된 개정법에 의하여 동일출원인에 의한 후출원의 부분의장, 부품의장에 대해 소위 확대된 선출원에 의하여 후출원에 의해 거절됨이 없이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장법 제 3 조 2)</p>

건 명	19. 물품과 수상기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화상디자인의 보호 확충 【계속】
현황/문제점	<p>1. 한국의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 2 조에 따른 화상디자인제도의 운용 상황 하에서는 「화면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면디자인을 표시한 상태로 공업상 이용 가능한 의장으로 취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물품과 화상과의 일체성이 요구되고 있다.</p> <p>2. 때문에 예를 들어 DVD 플레이어와 같은 물품이고 TV 또는 모니터 등에 조작내용이 구현화된 화상디자인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물품을 TV 또는 모니터 등으로 할 수 밖에 없으며, 현재로는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등과 같이 물품을 비교적 포괄적인 형태로 특정해서 출원할 수 밖에 없다.</p> <p>3. 근래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화면디자인은 해당 물품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용목적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도 의장법 상 보호되지 않으며, 화면디자인을 해당물품의 일부로 창작하고 그 창작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의한 제품개발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p>
개선요망	<p>화상의장 출원에 대해, <u>물품과 수상기가 분리되어 있어도 해당 물품의 일부로서 화상의장을 보호하고, 의장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화상디자인의 보호 확충을 요망한다.</u></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lt;관련기관&gt; 특허청 &lt;관련법령&gt;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p>
비 고	<p>일본에서는 2007 년 시행된 개정법 이후,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때 필요한 조작에 사용되는 화면디자인에 대해, 물품의 부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에 포함된 것으로서 보호하게 되어 있으며, 화면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확충되었다. (일본의장법 제 2 조 제 2 항)</p>

건 명	20.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로고와 아이콘 등의 보호 범위 【신규】
현황/문제점	<p>1. 한국이 로카르노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물품과는 상관없는 로고와 아이콘 등의 분류(제 32류)가 도입되었고, 그 결과 권리의 효력 범위에 대하여 물품의 제약이 없어짐에 따라 지나치게 권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p> <p>2. 본래 보호를 요청하지 않은 범위까지 보호해 주는 것은 권리자의 과잉 보호로 이어진다. 또, 제 3 자의 입장에서 보면 디자인의 제약이 엄격해지고, 산업 발달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p>
개선요망	<p>물품의 용도·기능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존속시키되, 예를 들면 <u>출원인이 출원 시에 보호 희망 범위를 특정하는 등, 일정의 제약을 마련할 것을 요망한다.</u></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lt;관련기관&gt; 특허청 &lt;관련법령&gt; 디자인보호법</p>
비 고	<p>일본에서는 로카르노조약 제 32 류에 해당하는 물품과는 상관없는 로고 등은 거절되고 있다.</p>



건 명	21.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무심사 물품의 재검토 【신규】
현황/문제점	<p>1.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디자인보호법 개정 시행규칙에 관하여 무심사 등록의 대상 물품이 추가되었다.</p> <p>2. 이는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이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조기에 권리를 부여한다는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으나, 예를 들면 H5(전자계산기 등)이 동 개정에서 무심사 물품으로 추가되어 있고, 이 중에는 H5-450(컴퓨터용 데이터 출력기)에 ‘프린터’가 포함되나, 프린터와 같은 제품은 결코 유행성이 강한 제품이 아니며, 수명은 시리즈제품인 경우 오히려 길다고도 할 수 있다. 또 F5(광고용품, 표시용구 및 상품진열용구)인 F5-210 ‘상품진열용구’등도 유행성이 강한 제품이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p> <p>3. 이와 같이 시장에 출시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길다고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권시리 등록을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권리 활용, 침해 회피라는 점에서도 후일 큰 비용과 시간을 요할 것이며, 또 제도 도입의 취지와도 모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p>
개선요망	<p>아래의 물품에 대하여 <u>심사물품, 무심사물품의 구분을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u></p> <p>B3 일용품  B4 가방 및 휴대용 지갑 등  B9 의류 및 일상용품 ; 범용부품 및 부속품  C4 가정용 보건위생용품  C7 경조용품  D1 실내용 소형 정리용품  F5 광고용품, 표시용구 및 상품진열용구  H5 전자계산기 등</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lt; 관련기관 &gt;  특허청  &lt; 관련법령 &gt;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p>
비 고	일본에서 의장권은 모두 심사를 거쳐 등록되고 있다.

<p>건 명</p>	<p>22. 상표출원의 선후출원에 관한 규정 적용의 판단 시기 개선 【계속】</p>
<p>현황/문제점</p>	<p>1. 선후출원에 관한 규정 적용의 판단 시기는 후출원의 ‘출원 시’이다. 따라서 선출원주의에도 불구하고 출원 타이밍 때문에 후출원이 등록될 가능성이 있으며, 출원인의 선출원 이익이 소실되는 구조이다.</p> <p>2. 선출원에 관한 규정 적용의 판단 시기가 후출원의 ‘출원 시’이기 때문에 선출원 A 의 거절, 취하 등이 확정되기 전에 선출원 A 와 유사한 후출원 B 를 출원한 경우, 후출원 B 의 출원 중에 선출원 A 의 거절 등이 확정되어도 후출원 B 는 거절된다.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원일을 늦추어 재출원해야 한다.</p> <p>3. 그러나 재출원 전에는 후출원 B 이후에 출원된 타인의 후출원 C 가 있을 경우, 선후출원이 역전되어 재출원인 후출원 B 는 후출원 C 를 인용하게 되어 거절당하게 된다.</p>
<p>개선요망</p>	<p>1. <u>선후출원에 관한 규정적용의 판단 시기를 후출원의 ‘사정 시’로 법 개정하고 난 후 선출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린 후에 후출원 심사를 착수하는 방법으로 운용을 변경해 주기 바란다.</u></p> <p>2. 현재 한국 특허청은 후출원 심사를 선출원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하는 운용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표법 7 조 3 항에 따르면 선출원의 판단시기를 출원 시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운용을 통해서도 개선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선출원이 불사용 취소 심판에 의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효과가 출원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후출원의 출원 시에 선출원이 등록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lt;관련기관&gt; 특허청 &lt;관련법령&gt; 상표법, 상표심사기준</p>
<p>비 고</p>	<p>일본 상표법 4 조 3 항에 일부 부등록사유에 대해서는 ‘사정 시’로 규정되어 있으나, 선후출원에 대해서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p> <p>그러나,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행정 처분의 판단 시기가 처분시주의(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법의 등록요건 판단 시기에 ‘사정 시’를 채택하고 있다.</p> <p>구미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도 판단 시기는 ‘사정 시’이다.</p>

건 명	23. 상표의 지정상품의 포괄적 기재에 관한 개선 【계속】
현황/문제점	<p>1. 종전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지정상품의 포괄적 기재 표현이 현재는 일부 인정되고 있다.</p> <p>예 ;  (종전) 잉크젯프린터, 레이저프린터, 서멀프린터  (현재) 프린터</p> <p>2.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프린터 및 그 부속품’과 같은 기재가 인정되지 않으며, 부속품에 관한 상표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사용예정 부속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열거해야만 한다. 또, 새로운 부속품에 상표권 보호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때마다 신규 출원을 해야 한다.</p> <p>3. 본체 상품의 부속품에 본체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붙이는 행위는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 한정 열거하도록 하는 현행 운용방식은 타인에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므로 문제라고 생각한다.</p>
개선요망	‘본체 상품 및 그 부속품’의 기재를 포함한 <u>지정상품의 포괄적 기재 표현을 폭넓게 인정해 주기 바란다.</u>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 관련기관 > 특허청 < 관련법령 > 상표법, 상표법 심사기준
비 고	일본에서는 ‘전자응용기계기구 및 그 부속품’등의 기재 표현을 인정하고 있다.

건 명	24. 특허청 웹사이트(KIPRIS)에서 제공되는 의장, 상표 검색시스템의 개선 【계속, 일부 변경】
현황/문제점	<p>1. 한국 특허청에서는 한글 공보에 일부 영문번역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KIPRIS 의 서비스에서 의장 · 상표검색에서 영어검색이 가능하다.</p> <p>2. 그러나 영문번역되어 있는 공보 항목은 일부이며 모든 공보가 영문으로 번역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어 검색과 한글 검색에서 검색결과가 다르다.</p>
개선요망	<p>KIPRIS 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u>모든 의장 · 상표 공보에 대하여 영문번역을 실시하여, 영어검색과 한글 검색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u></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lt;관련기관&gt;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p> <p>&lt;관련법령&gt; 특별히 없다.</p>
비 고	<p>일본의 전자특허도서관 ( I P D L ) 서비스를 통해 상표를 영어로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다.</p>

건 명	25. 지적재산 판례집의 제공 【신규】
현황/문제점	<p>1. 대법원 홈페이지에 ‘주요판결’이 공개되어 있으나, 모든 판결이 공개되지 않고 ‘주요’한 것에 제한되어 있는데다 지적재산 관련 판결로서는 정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적재산 관련 법원 판결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p> <p>2. 그 밖에 판결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명 등이 가려져 있어 사안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p>
개선요망	<p>1. <u>법원에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모든 판결에 대하여 일본의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홈페이지처럼 전문을 공개해 주기 바란다.</u></p> <p>2. 또, 이 때, 기업명에 대하여 글자를 가리지 말고 공개함과 동시에 법률이나 결론의 구분, 법원의 별(別) 등에 대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요망한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lt; 관련기관 &gt; 최고법원, 특허법원</p> <p>&lt; 관련법령 &gt; 특별히 없음</p>
비 고	일본에서는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에서 지적재산 관련 판결이 모두 정리되어서 공개되고 있으며, 게다가 텍스트 검색이나 기타 각종 관점에서 검색할 수 있다.

건 명	26. 외국 권리자(단체)에 의한 한국의 저작권 등 침해 시정 명령 및 한국내 절차를 위한 신고의 용이화 【신규】
현황/문제점	<p>1. 외국의 권리자(단체)가 한국에서 인터넷 상의 해적판 대책으로서 선진적인 정책·법제도인 저작권 등 침해 시정명령·권고 절차를 위하여 신고하려 할 경우, 한국에서 한국의 관련 회사·대리인 등을 통하여 한국어로 실시해야만 한다.</p> <p>2. 따라서 해당 제도는 선진적이고 매우 의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p>
개선요망	<p><u>상기 신고를 외국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또는 외국에서 저작권 위원회 해외 사무소를 통하여 영어·일본어 등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u></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lt;관련기관&gt;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p> <p>&lt;관계법령&gt; 저작권법 등</p>
비 고	

건 명	27. 한국의 시청자를 위한 TV 프로그램, 극장용 영화 라이선스 비즈니스의 문제점 【계속】
현황/문제점	<p>1. 한국에서는 여전히 일본 프로그램을 지상파에서 배척하고 있다. 한국 콘텐츠가 일본을 비롯하여 아시아 시장을 석권하는 실력을 쌓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공평하게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p> <p>2. 또, 인터넷 상에서 자막이 삽입된 일본콘텐츠의 불법 업로드가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TV 프로그램(프로그램 포맷)의 모방도 횡행하는 등,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인식이 부족하다.</p>
개선요망	<p>1. <u>전근대적인 일본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완화</u>해야 하며, 일한 정부기관이 이 사실을 재인식한 후, 시장 개방을 위한 작업을 개시해 주기 바란다.</p> <p>2. <u>또, 저작물에 대한 계약 및 법령준수 지도, 계몽활동을 강화</u>하고, 지적재산에 대한 인식을 <u>향상시켜주기</u> 바란다.</p> <p>3. 특히 <u>초미의 과제</u>로서 <u>인터넷을 통한 해적판의 불법 업로드 삭제 및 단속 강화와 함께 TV 프로그램 포맷 모방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지도해 줄 것을</u> 요망한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lt; 관련기관 &gt;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p> <p>&lt; 관계법령 &gt; 저작권법 등</p>
비 고	

건 명	28. 국경조치의 강화 【계속】
현황/문제점	<p>1. 현재, 관세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상표와 저작권만의 국경조치 규정이 있으며, 특허권 등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이다.</p> <p>2. 한편, 한국 기업의 기술·디자인 등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한국 국내로 유입·유통되는 모조품·해적품이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며 단속이 급선무이다.</p>
개선요망	<p>1. 국경조치 적용 범위를 특허권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조기에 실현시켜 주기 바란다.</p> <p>2. 특허권 등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방침이라고 들은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단속은 권리 범위, 침해 인정의 여부에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곤란하다는 점은 사료되나, 근래의 한국 기업의 경제 활동 국제화나 제품 품질 및 기술·디자인 등의 경쟁력 향상에서 비추어 보아, 한국 국내에 유입·유통되는 모조품·해적품의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써 특허권 등 주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경조치가 가능한 제도의 조속한 실현을 요망한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lt; 관련기관 &gt; 관세청</p> <p>&lt; 관련법령 &gt; 관세법 235 조</p>
비 고	<p>일본의 관세법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회로배치이용권 및 육성자권 등 주요 지적재산권을 모두 열거하여 이들 권리 이해에 대한 국경조치가 가능한 규정이다. (일본관세법 69 조의 11 제 1 항 제 9 호)</p>



<p>건 명</p>	<p>29.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및 통과규제 강화, 단속직원에 대한 모조품 판별교육 등의 확충 【계속, 일부변경】</p>
<p>현황/문제점</p>	<p>1. 일본 세관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으로 압수된 수입품 가운데 한국에서 들어온 것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p> <p>2. 또, 모조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품의 유통경로가 복잡해지고 있는 근래, 중국으로부터 환적에 의한 모조품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p> <p>3. 게다가 지적재산권 침해품 단속 대책을 위해서는 수출입, 화물통과 시의 세관 직원 등 단속 직원에 의한 모조품 단속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 해당 단속 직원에 대한 모조품의 판정 교육은 종전 이상으로 중요하다.</p>
<p>개선요망</p>	<p>1. 지금까지 국경조치로서 한국 수입 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단속이 실시된 바, 앞으로는 <u>수출 및 통과 시에도 지적재산권 침해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u></p> <p>2. 또, <u>세관 직원에 대한 모조품의 판정 교육에 대하여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협회의 회원 기업 외에 모조품의 피해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u></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lt;관련기관&gt; 관세청, 무역관련 지적재산보호협회</p> <p>&lt;관련법령&gt; 관세법</p>
<p>비 고</p>	<p>일본, 한국을 비롯해 8 개국이 모조품 등의 수출입, 통과 금지 등을 규정한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ACTA)에 서명하고, 조기 발효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또, 해당 협정은 당국의 능력개발과 지적재산권 전문가 육성 등도 강조하고 있다.</p>

#### 4. 개별요망사항

<p>건 명</p>	<p>30.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품 가격과 관련하여 시장가격을 조사하고자 인터넷가격 조사를 할 때 종합적이며 적절한 판단의 필요성에 대해 【신규】</p>
<p>현황/문제점</p>	<p>조달청장은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수요물자의 구매계약을 할 때, 미리 다수공급자 및 공급단가(계약단가)만 결정하고, 그 이후에는 각 수요기관이 직접 해당물자의 납품요구·대금 결재를 하는 계약(다수공급자 계약)이다.</p> <p>다수 공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은 계약단가 이하로 판매하지 않을 것을 엄수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계약단가 이하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매년 세금계산서, 매출거래 내역, 매출원장 등의 증거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p> <p>한편, 근래의 비즈니스 형태로서 인터넷거래가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계약단가보다 낮은 온라인 가격이 시장에 형성될 때도 있는데, 조달청은 인터넷 시장이라도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시장실태가 있다면 그 가격에 근거한 계약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현실이다.</p> <p>그러나 인터넷 시장의 상품은 무점포 판매, 소인원 경영 등의 이유로 저가에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식 유통로에 의한 상품 입수, 일회성 저가 광고를 위한 판매, 판매점의 경영 악화에 의한 손실 판매일 경우 등, 그 상업 실태에 관해서는 신뢰성이 결여된 부분도 많아 일률적으로 인터넷가격을 시장 최저가격으로 간주하고 다수공급자에게 그 가격을 요구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본 지속적 거래, 신뢰성 측면을 고려해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p>
<p>개선요망</p>	<p>상기 현황 및 문제점을 고려해 아래의 두 가지에 대하여 검토해 주기 바란다.</p> <p>① 가격조사 시,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이 존재할 경우 인터넷(온라인)상의 거래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그 인터넷 거래 가격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가격 모니터링을 한 뒤 조치(가격 인하)를 취해주기 바란다.</p> <p>② 인터넷 가격과 오프라인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즉, 오프라인에서는 추가 서비스(직접 배송, 엔지니어 방문, 제조회사 서비스 등)이 있으므로 그만큼 가격이 오른다. 이런 점도 고려해 주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lt; 관련기관 &gt; 기획경제부, 조달청          &lt; 관련법령 &gt;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 조의 2 (다수 공급자 계약)          • 다수 공급자 계약 업무의 처리 규정(조달청 훈령 제 1486 호, 2010.3.31)의 제 21 조(계약금액 조정 및 최고 우대 가격)</p>
<p>비 고</p>	

건 명	3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사전통지 및 연기 승인 【신규】
현황/문제점	<p>기업이 법령준수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 당국이 여러가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현장조사(국세청, 관세청, 노동부, 환경부 등의 조사)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서가 일정 기간 이전에 송부된다.</p> <p>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는 사전통지 없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고, 또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을 아래 4 가지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어서 실무상 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천재지변의 발생</li> <li>2. 합병·인수,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파산,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li> <li>3.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장부·증거 서류가 압수·영치된 경우</li> <li>4.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사업 진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li> </ol> <p>한국에서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은 본사 규모는 크지만 한국 현지법인은 중소기업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사전통지 없이 갑자기 현장 조사를 받을 경우, 조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적은 인원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사를 받게 됨으로써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조사를 연기하려고 해도 법률에 열거된 연기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기 신청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p>
개선요망	<p>상기 현황 및 문제점을 감안하여 아래 2 가지에 대하여 검토해 주기 바란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전통지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현장 조사 시, 일정기간(예를 들면 1 주일)전 사전통지를 요망한다.</li> <li>② 조사연장사유 추가 사업자가 충분히 준비하고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응하겠다는 취지 표명이 있을 경우, 증거 인멸이나 도주형의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관련처분·조사를 원칙적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망한다.</li> </ol>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lt;관련기관&gt; 공정거래위원회 &lt;관련법령&g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0 조의 3</p>
비 고	

<p>건 명</p>	<p>32. 전기전자제품 등 폐기물 관리기관의 일원화 【신규】</p>
<p>현황/문제점</p>	<p>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처리·재활용에 관한 법령은 2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관리기관도 2곳으로 나뉘어 있다.</p> <p>즉, 폐기물관리법의 관할 기관은 지방 환경청이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의 관할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다.</p> <p>폐기물의 배출·수집·재활용·처분을 하려는 자는 지방 환경청의 ALLBARO- System 에 입력하게 되어 있다. 또, 자원환경법에 의해 산업폐기물(지정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ECOAS- System 에 입력해야만 한다.</p> <p>위와 같이 유사 데이터 및 실적자료 등을 관할 기관별로 신고 및 관리되고 있어 회사 내부에서는 이중의 수고가 들며, 업무상 손실 및 혼선이 발생되고 있다.</p>
<p>개선요망</p>	<p>상기 현황 및 문제점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요망한다.</p> <p>상기와 같이 폐기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둘로 나뉘어 있어 일반 회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담당관리인원이 필요해서 고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관리기관을 일원화해주시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lt;관련기관&gt; 환경부 산하의 지방 환경청 및 한국환경공단 &lt;관련법령&gt; 폐기물관리법 제 18 조 제 3 항 전기 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39 조</p>
<p>비 고</p>	

건 명	33.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개선 【계속】
현황/문제점	<p><b>【현황】</b>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특허만료 시에 ▲30%, 그 1년 후에 함께▲46.45% 일괄하여 강제적으로 인하하는 약가 사후관리제도안이 8월 12일부로 한국보험복지부에서 발표되었다. (2012년부터 실시 예정)</p> <p><b>【문제점】</b>  특허 만료 Original 의 일률적인 강제인하폭은 현재 상태의 -20%라도 과다하며, 이번 정부안인 특허만료 시 -30%, 1년 경과 후 -46.5%는 예사롭지 않다.</p> <p>Original 과 Generic 과의 현행 제도의 차이 15%는 과소하며, 하물며 본안에서는 특허만료 1년 후의 차이는 0%이다. Original 과 Generic 의 약가 차이는 오히려 확대되어야 하며, 정부안으로도 Original 과 Generic 의 가격차이가 작은 점을 문제시하면서도 그 반대의 대책이 되고 있다.</p> <p>정책에 의한 강제적인 일률적 대폭 인하에 의해 Original 과 Generic 모두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사업 전략의 선택지는 현저하게 한정되며, 기업간의 적정한 자유 가격 경쟁이 저해된다.</p> <p>대상환자수, 대상질환의 위독함, 개발 경위, 특허의 강도, 제조 원가, 경쟁 상황, 판매 기업에 의한 정보 활동의 부가가치 등, 개별 의약품의 가치가 의료시장에서 평가되어 가격이 형성되고 약가가 수정되어야 한다.</p> <p>작년 11월부터 도입된 시장가격연동약가제도는 원래 그와 같은 생각에도 배려하여 시행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단, 정부 권한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과다한 약가차이 경쟁을 유도하려 하는 동제도 기법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의약품 가치를 되돌아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강제 인하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난폭하다.</p>
개선요망	<p>한국정부가 2011년 8월에 발표한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2012년에 현행가격의 53.55%까지 일괄 인하하는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요망한다.</p> <p>(1) 특허 만료에 따른 Original 의 강제 인하폭을 압축한다.  (2) Original 과 Generic 의 약가 차이를 확대한다.  (3) 그런 다음, Original 과 Generic 의 자유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p>

개선요망	<p>Original 과 Generic 에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적용한다. 의료 기관에 대한 보험 상환과 환자의 자기 부담 부분은 실구입 가격에 의한 것으로 하고, 시장 실거래 가격은 차년도 약가에 반영시킨다.</p> <p>단,</p> <p>① 정부에 의한 의료 기관, 보험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지불은 철폐한다.(이유)</p> <p>과도한 이유의 가격 경쟁이 출현하여 약제의 적정 사용이 저해되고, 의약품 취급 각 당사자에게 가격인하 협상에 대한 경영 자원 투하라는 의료의 비효율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p> <p>② 10%이상의 시장거래가격과 약가와외의 괴리폭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에서 감면하겠다는 경과 조치도 철폐한다.</p> <p>(이유)</p> <p>10%이상의 괴리폭으로 가격경쟁이 전개될 경우, ①과 같은 우려할만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격경쟁 상태가 그대로 약가에 반영된다는 투명한 룰이 있어야만 자유로운 가격경쟁이 실현되고, 의료보험재정에서의 적정한 약제비도 실현된다. 경과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전에 일본이 실시했던 것처럼 Reasonable Zone (R Zone) 을 순차적으로 압축해 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가중평균 시장가격 연동약가제도를 채택한 당시의 일본에는 과다한 약가마진에 경영자원을 의존했던 많은 의료기관이 존재했었다. 한국 의료기관들은 약가마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과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된다.</p> <p>예) R Zone1 년째 : 15%, 2 년째 : 10%, 3 년째 : 5%, 4 년째 0%로 했을 경우, 1 년째부터 4 년째까지 시장 가격이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인 20%라는 약가 괴리율이 형성되었다면 약가개정율을 각각 -5%, -10%, -15%, -20%로 한다.</p> <p>③ 각 기업의 연구 개발비 투자실적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시장가격의 약가괴리폭이 아무리 과다하더라도 약가 인하폭은 10%까지로 하는 특례도 철폐한다.</p> <p>1) 첫번째 이유는 개별 제품의 가치는 어디까지나 제품별로 시장에서 평가되고, 제품별로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며, 판매하는 기업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의 자유가격경쟁에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경제적 유도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요소를 혼재시켜서는</p>
------	---

	<p>안 된다.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경제적 유도는 정부안에도 있듯이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면 된다.</p> <p>2) 두 번째 이유는 해외 본사와의 연결 기준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외국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p> <p>3) 세 번째 이유는 ①과 마찬가지로이다.</p> <p>(4) 리베이트 개재에 의한 불공정 거래가 입건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감면조치 없이 즉시 엄정한 약가 인하 조치를 강구한다.</p> <p>(5) 기존의 다른 약가 사후관리제도들 가운데 취지가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폐하고, 시판 후의 약가 추이를 투명하게 보증하고,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킨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lt; 관련기관 &gt; 보건복지부</p> <p>&lt; 관련법령 &gt; 국민건강보험법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조정」 (보건복지부공시)</p>
<p>비 고</p>	



건 명	34. 신약 약가산정 절차의 개선 【계속】
현황/문제점	<p><b>【현황】</b>  약가 산정 협상의 이원화에 의한 저약가산정과 협상장기화 다발</p> <p><b>【문제점】</b>  2007년 1월, 보험약가 산정제도가 Positive List System 로 변경된 이후, 신약의 산정 약가는 선진 7개국 평균치의 35%로, 다른 나라에 비해 극단적으로 낮다.</p> <p>또, 동시기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HIRA : Health Insurance Review &amp; Assessment Service) 에 더하여 건강보험공단 (NHIC :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과 이중으로 약가를 협상한 결과, 협상 기간이 관시리 장기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도 많아, 오랜 시간과 막대한 개발투자를 들여 보건당국에게 유효성, 안정성을 인정받아 허가된 신약이 일상적인 보험진료에 사용되지 않고 보험상환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p> <p>2009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59개 품목의 신약이 허가되었으나, 이들이 승인되기까지의 약가 협상에 평균 약 1년 반이나 소요되고 있다(최장 3년인 경우도 있음). 이 가운데, 협상이 성립되어 보험상환된 품목은 29품목 뿐이며, 협상 결렬 의사표명이 있던 것이 9품목, 사실상 결렬되었다고 여겨지는 것도 7품목에 이르고 있다.</p> <p>저약가 산정을 목적으로 한 협상의 장기화로 인해 신약 개발투자의 회수기간인 특허기간은 사실상 단축되고, 저약가 산정에 따라 장기 협상에 지친 제약기업의 경제적 이익은 더욱 압박을 받아 수익기대기간 단축과 저가격으로 인하여 신약개발투자비용의 회수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또, 한국 내에서 많은 개발 투자를 실시하여 판매 허가를 취득한 신약이라도 사업 전개를 통한 투자 회수의 전망이 서지 않아 제품 판매를 연기하는 품목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p> <p>NHC 가 개별 제약기업과 약가협상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1)항’이라고 하나 <sup>(참고*1)</sup> 근거로서 너무 빈약하며 규제 당국에 준하는 기관과 개별 민간기업과는 협상당사자로서의 역학관계를 볼 때 현저히 불균형적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p>

<p>개선요망</p>	<p>(1) HIRA 과 NHIC 의 업무 분담을 명확화하고, 중복적 약가산정 협상이 제약기업에 주는 부담을 개선해 줄 것을 요망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약 약가협상 창구를 이전과 같이 HIRA 로 일원화해 주기 바란다.</li> <li>• HIRA 와의 신약 약가 취득 과정에서 의료 경제 평가 (HTA ;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에 의해 산정 약가의 합리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가격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li> </ul> <p>(2) 합리성이 결여된 아래 규정을 철폐해 주기 바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동효품인 제네릭을 포함한 가중평균치가 상한 가격’이 된다</li> <li>• ‘3 개국 이하 보험 약가 등재가 3 개국 이하인 경우, 참조 가격 최저가의 80%에서 약가를 산정한다’(아시아개발 의약품에 한하여)</li> </ul>
<p>관련한 기관, 관련법령 등</p>	<p>&lt; 관련기관 &gt; 보건복지부, 보건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p> <p>&lt; 관련법령 &gt;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 계약을 통해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은 1 년으로 한다. &lt;개정 1999.12.31&gt;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공시) ‘약가 협상 지침’(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시)</p>
<p>비 고</p>	

## 5. 생활환경개선 분야

<p>건 명</p>	<p>35. 교통문제 개선 【계속 / 내용 변경】</p>
<p>현황/문제점</p>	<p>1. 보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                  2. 신호를 무시하는 차, 노상 주차 단속, 전진할 수 없는데도 정체된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더욱 정체를 유발하는 차량                  3. 급발진, 급정차하는 버스</p>
<p>개선요망</p>	<p>보행자의 안전 확보 관점에서 더욱 단속을 강화하고, 벌칙 규정과 교통 규칙을 엄수하고, 교통 의식 향상을 지도해 주기 바란다.</p> <p>버스의 급정차, 급발진에 대해서는 노인, 어린이 등이 넘어질 위험성이 높고,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난폭운전을 삼가하는 등, 운전기사의 도덕성에 대해 지도 및 교육해 주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lt;관련기관&gt; 행정안전부                  &lt;관계법령&gt; 도로교통법</p>
<p>비 고</p>	